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-215호

2022년 하반기 정규직 보훈대상자 채용 공고

1. 채용예정인원 및 자격기준

직종	직무	직급 (분야)	인원	자격기준
총계			12명	-
행정직	사무행정	6급갑	5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제한 없음
심사직	간호사 등	5급	2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- 관련 면허: 간호사, 의료기사,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- 관련 업무: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임상이나 심사경력 또는 진료비 심사기관의 심사경력 *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라 의료기사는 '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사, 치과위생사'로 구분 * 치과기사·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인정 * 진료비 심사기관 인정 범위: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, 근로복지공단 산재의학센터
전산직	시스템 개발	6급갑	5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산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- 관련 자격: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기사, 정보통신기사
공통 자격기준		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「병역법」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* 군필, 미필, 면제 및 '22. 12. 27. 이전 전역예정자는 지원 가능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71조에 따라 수습 임용(예정)일 기준 정년(만 60세)이 도래하지 않는 자 수습 임용(예정)일부터 근무가능한 자 * 수습 임용(예정)일: '22. 12. 28.(수)

※ 직종·직무별 수행업무, 관련 자격 등은 [별첨1] 직무설명자료 참고

※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인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전형·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전형·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'부적격' 처리

□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안내

※ 우리원은 2022년 퇴직공직자 “취업심사대상기관”으로, 해당자는 관계 법령 및 절차 등을 반드시 확인

<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 >

제17조(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)

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(이하 이 장에서 “취업심사대상자”라 한다)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(이하 “취업심사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에 취업할 수 없다.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8. 안전 감독 업무, 인·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(이하 생략)

<건강보험심사평가원 「인사규정」 제14조 임용결격사유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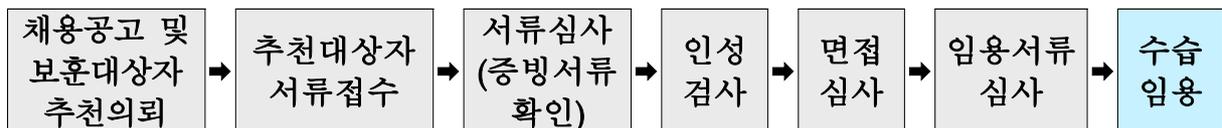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9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10.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경우에 그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2. 근무조건 등

- 근로형태: 정규직 (수습임용기간: 3개월)
- 근무시간: 주 5일(40시간), 09:00~18:00(휴게시간 1시간 포함)
- 근무지역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(강원도 원주시)
 - ※ 임용 후 인력운영 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역은 변동될 수 있음
- 보수수준: 우리원 제규정에 따름(직급, 경력기간 등에 따라 상이)
 - ※ 신규직원 초임은 공공기관 경영공시(ALIO) 자료 참고

3. 전형절차 및 일정

전형절차



전형일정

전 형	일 정	비 고
채용공고 및 보훈대상자 추천의뢰	· 9. 13.(화)	· 국가보훈처 의뢰
추천대상자 서류접수	· 9. 22.(목) ~ 10. 6.(목) 18시	· 채용 홈페이지 등 안내
서류심사 결과발표	· 10. 14.(금) 17시 이후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인성검사(온라인)	· 10. 17.(월) 09~18시	· 인성검사 홈페이지
인성검사 결과발표	· 10. 20.(목) 17시 이후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면접심사	· 10. 27.(목) ~ 10. 28.(금)	· 우리원 본원
면접심사 결과발표	· 11. 16.(수) 17시 이후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임용서류 등록	· 11. 16.(수) 18시 ~ 11. 18.(금) 18시	· 채용 홈페이지 등록
최종 합격자 발표	· 12. 7.(수)	· 채용 홈페이지 발표
수습 임용	· 12. 28.(수) 예정	-

【합격자 조회 방법】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incruit.com>) > 메인화면 > 합격자발표

※ 상기 일정은 내·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국가보훈처를 통해 안내 예정

4. 이전지역(강원)인재 채용목표제 운영

□ 행정직 지원자에 한하여 적용

구분	세 부 내 용
적용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(대학원 제외)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, 졸업예정인 사람
적용 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용시험의 실시단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30%에 달할 때까지 초과하여 합격 처리 채용 전형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비율 미달 시 합격하한선(합격선의 -5점) 이내에서 목표인원까지 채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
적용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심사직 지원자)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(전산직 지원자) 분야별 연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시험 결과가 미리 정하여 공고한 합격하한선(합격선의 -5점)에 미달하는 경우
관련 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「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」

5. 우대사항

분야	항목	자격기준	가산점
사회 형평적 채용	취업 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다음 각 법률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의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취업지원)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(취업지원) 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-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(취업지원 등) * 단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 제3항에 따라 가점합격자는 모집분야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. 가점합격자가 상한인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인원을 합격자에서 제외하며, 응시자 가운데 원점수의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가점합격자)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자를 의미하며, 가산점을 제외한 원점수로도 합격점수를 넘은 경우는 가점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 * 임용포기 등 결원발생으로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경우, 기존 가점 합격자를 포함하여 당초 선발예정인원의 30% 내에서 합격자 결정 *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,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만 부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예외적으로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면서 응시자의 수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산점 부여 * 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 시 취업지원 대상자별 가산점을 구분하여 적용 	전형별 만점의 증명서상 가점 (5% 또는 10%)
	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(정의)에 따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* 장애인 중 경증과 중증의 구분은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및 제4조를 따름 	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 (경증: 5%, 중증: 10%)

※ 우대사항 해당자는 서류접수 마감일('22. 10. 6.) 기준 해당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해야 함

※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 내 가점 중복 시,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적용

※ 인성검사는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

6. 채용공고 및 보훈대상자 추천의뢰

- 공고 및 추천의뢰: 2022. 9. 13.(화)
 -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범위 내 추천의뢰(우리원 → 국가보훈처)
 - 국가보훈처에서 보훈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및 희망자 신청 접수(9. 13. ~ 9. 19.)

7. 추천대상자 서류접수

- 추천대상자 확정 및 통보: 2022. 9. 22.(목) (국가보훈처 → 우리원, 보훈대상자)
- 서류접수
 - 대 상: 국가보훈처에서 추천받은 보훈대상자
 - 일 정: 2022. 9. 22.(목) ~ 10. 6.(목) 18:00
 - 방 법: 채용 홈페이지*를 통한 온라인 접수(방문·우편 접수 불가)
 - * 입사지원서 작성 URL: <https://hira.incruit.com/apply/index.asp?projectID=127>
 -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	등록 대상	발급 유효기간
1	▪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)	지원자 전원 (전 직종 필수)	없음
2	▪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※ 제출처 '건강보험심사평가원'으로 발급		
3	▪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※ 서류접수 마감일(22. 10. 6.) 기준 취득분까지 인정	자격사항 입력자 (심사직·전산직 필수)	서류접수 기간 내 발급분
4	▪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 인턴은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(근무기간 명시) ※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(홈택스 발급) ※ 경력증명서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	경력사항 입력자 (심사직 필수)	
5	▪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류	해당자	
6	▪ 최종학력 졸업(예정)증명서	이전지역(강원)인재 해당자	
7	▪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, 개명사항 포함)	▪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▪ 개명자	
8	▪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	해당자	-

- ※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,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
- ※ 반드시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일(발급 유효기간)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함
- ※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는 블라인드 처리하되, 응시자(성명 및 출생월일 등)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, 성명 및 출생월일 등 필수정보 식별 불가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
- ※ 최종 합격자는 이전지역(강원)인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임용일 당일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 제출 필수

□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

1. 입사지원서의 각 항목마다 정확하고 충실하게 작성

- 자격요건에 따른 지원분야를 반드시 확인
- 이전지역(강원)인재 대상 여부는 반드시 **[별첨2] 「이전지역인재 적용대상 세부 기준」** 을 확인 후 표기
- 자격/면허 사항은 자격명칭과 발급기관명, 자격증번호, 취득일자를 반드시 입력
 - 자격증번호 등 오기재 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입력 (다빈도오류: 0, O 등)
- 직무 관련 경력사항은 반드시 아래 유의사항에 따라 입력
 - 같은 의료기관 내 경력이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반드시 정규직·비정규직 경력을 구분하여 입력(추후 경력연수 산정에 영향)
 - ex) 경력이 '01. 1. 1.~'03. 12. 31.인데, 최초 3개월 간 경력이 임시직, 계약직 등의 정규직이 아닌 근로형태라면 "(계약직) '01. 1. 1.~'01. 3. 31. / (정규직) '01. 4. 1.~'03. 12. 31." 으로 반드시 정규직 경력과 구분하여 행을 추가하여 입력
 - 심사직 경력은 면허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됨
 - ex) 경력이 '01. 1. 1.~'03. 12. 31.인데, 면허취득일이 '01. 1. 15.이라면 경력시작일은 '01. 1. 15.로 입력
 - 근무부서, 담당업무, 직급 등 명확히 기재 (추후 검증·확인 절차 진행)

2. 모든 사항을 기재하고 반드시 「입사지원서 제출」 버튼을 누른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

3. 접수 마감시각('22. 10. 6. 18:00)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이 불가함 (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내용 수정 및 지원서 삭제가 불가하며, 관련 사유로 입사지원서를 이중제출 할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모두 '부적격' 처리)

4.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인당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직종을 달리하거나 동일 직종에 중복지원할 경우(추후 확인 포함) 모두 '부적격' 처리

- ex) 심사직과 행정직 중복지원, 행정직 이중지원 모두 '부적격' 처리

5.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사전 접수 요망

【 블라인드 채용 실시 안내 】

-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여 입사지원서 내 성별, 학력, 나이,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 기재란이 없으며, 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단, 본인확인 용도를 위해 출생월일(MM, DD) 입력
- ※ 이전지역(강원) 인재 해당자는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 최종학력 졸업(예정) 증명서 제출 시 학교명을 공개하여 등록
- 면접심사 시 편견요소(성별, 나이, 학력, 가족관계 등)에 대한 정보는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8. 서류심사

- 대 상: 입사지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자 전원
- 심사기준: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충족여부 및 (필수)증빙서류 확인
- 합격자 선발: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적격자
- 결과발표
 - 일 시: 2022. 10. 14.(금) 17:00 이후
 - 방 법: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(SMS, E-mail)
 - 내 용: 서류심사 합격 여부 및 인성검사 관련 안내

9. 인성검사

- 대 상: 서류심사 합격자
- 기 간: 2022. 10. 17.(월) 09:00~18:00
- 방 법: 온라인 실시
- 합격자 선발: 기간 내 인성검사(조직적응검사 포함) 실시 완료자
- 결과발표
 - 일 시: 2022. 10. 20.(목) 17:00 이후
 - 방 법: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(SMS, E-mail)
 - 내 용: 인성검사 합격 여부 및 면접심사 관련 안내

10. 면접심사

- 대 상: 기간 내 인성검사(조직적응검사 포함) 실시를 완료한 자
- 기 간: 2022. 10. 27.(목) ~ 10. 28.(금)
- 장 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등
- 면접방법

구 분	평 가 내 용
다대일 집중면접 (면접위원 다수 / 면접자 1인)	직무기초능력 및 조직적합도 등 종합평가 (심층, 인성면접)

- 선발인원: 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
- 결과발표
 - 일 시: 2022. 11. 16.(수) 17:00 이후
 - 방 법: 채용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(SMS, E-mail)
 - 내 용: 면접심사 합격 여부 및 임용서류 등록 관련 안내

11. 임용서류 등록

- 대 상: 면접심사 합격자
- 기 간: 2022. 11. 16.(수) 18:00 ~ 11. 18.(금) 18:00
- 방 법: 임용서류 스캔 후 채용 홈페이지 등록(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)

※ 제출 서류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

12. 기타사항

- 입사지원서는 지원자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음
- 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
 -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지거나, 각종 경력 및 신원조회 등 임용(증빙)서류 심사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원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-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우리원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향후 5년 간 우리원 채용에 지원할 수 없음
- 면접심사 시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유효기간 내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) 지참 시 응시 가능함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37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에 따라 사전요청 시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에 필요한 장애인 지원자 편의제공이 가능함
 - 편의제공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반드시 우리원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에 신청 사항을 작성해야 함
 - ※ [별첨3] ‘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기준 및 안내사항’ 참조
 - 이후 인성검사, 면접시험 각 절차별로 응시 대상이 되면 안내에 따라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승인 여부는 별도 안내 예정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음
 - 다만,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

- 면접 또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(증빙) 서류 허위·착오기재, 임용결격사유, 지원자격 불충족 등에 해당하거나 각종 경력 및 신원 조회 등 임용(증빙) 서류 심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 할 수 있음
- 신청기간: 2022. 12. 7.(수) ~ 12. 21.(수)
-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(<https://hira.incruit.com>) - '이의신청'

<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>

- ▶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
- ▶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와 관련한 사항
- ▶ 지적재산권(외부출제기관)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
- ▶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
- ※ 전형별 평가기준, 개인별 취득점수(순위)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 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불가함

-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임용포기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하며, 임용사유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함
- 운영기한: 2022. 11. 25.(금) 18:00까지
- 수습 임용 후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 또는 교육 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임용 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
- ※ 4대 보험 가입자의 경우 임용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를 완료해야 함
- 기타 문의사항: ☎ 1899-3504

2022. 9. 13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